

#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2,344,849	8,170,345
일반회계	208,820,533	6,264,616
특별회계	63,524,316	1,905,729
공기업특별회계	2,452,434	73,573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2,452,434	73,573
기타특별회계	61,071,882	1,832,15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46,638	166,39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6,183	15,485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68,422	26,053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2,445,160	673,35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080,360	302,41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565,200	196,956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050,000	61,5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495,419	374,863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410,090	12,303
기반시설특별회계	94,410	2,8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99,105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